

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3. 22.(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임의 규정인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사
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제11조)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체화(제11조 제1항)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위원 구성(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제5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일자리복지과
- 라. 입법예고 : 2022. 1. 20. ~ 2. 19.(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사무국 및 실무협의체 운영 권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협의체인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현행 실무협의회의 단순 설치규정을 10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9월에 개최한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실무협의회의 설치·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노사민정 간의 협력 활성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하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은 11개¹⁾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 11 시·군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하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좌 기능을 수행할 하부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추가 되는 시(市)의 재정 수반 요인은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발생 비용은 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연 1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7명×10만원×2회 = 140만원)

4. 작성자

복지국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0.8.26]]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현행 조례)

☑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682호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남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0.]
5. 그 밖에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변경 2019. 10. 10.]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총 수는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 노사민정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82호, 2019. 10. 10.>(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